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황철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9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황철규 의원(1명)
찬성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길영,
김영철, 김용호, 김원태,
김태수, 김형재, 남궁역,
신복자, 오금란, 유정희,
이상욱, 이성배, 이숙자,
이종태, 이종환, 이희원,
임춘대, 채수지, 최민규,
최유희 의원(22명)

1. 제안이유

-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,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.
- 현행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은 심의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나,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참여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관점에서의 판단이 미흡한 실정임.
-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하는 근거를 명문화하여, 피해자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심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함(안 제24조제1항).
- 나. 피해경험 학부모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의무 규정(안 제24조제2항 단서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,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(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교육감은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제1항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심의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<u>제24조 ~ 제26조 (생 약)</u>	<p><u>제24조(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)</u> <u>의 구성·운영) ① 교육감은 법</u> <u>제12조제1항에 따라 각 교육지</u> <u>원청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</u> <u>를 둔다.</u></p> <p><u>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</u> <u>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</u> <u>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</u> <u>서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</u> <u>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</u> <u>학부모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학</u> <u>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</u> <u>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</u> <u>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심의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</u> <u>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</u> <u>않은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는</u> <u>바에 따른다.</u></p> <p><u>제25조 ~ 제27조 (현행 제24조부</u> <u>터 제26조까지와 같음)</u></p>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4조(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를 신설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피해경험 학부모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,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기편성(민주시민교육과 생활교육팀¹⁾)하여 시행하고 있어,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희

추계제제팀장 김 중현

추계분석관 김진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2025 서울시 교육청 예산서

<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>

(단위 : 천원)

사업	사업예산	사업추진 세부내용
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운영	2,203,166	심의위원회 운영비 ▶ 심의위원회 관련수당 업무추진비 ▶ 사업추진경비